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비슬구천공원 테마공간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2. 목 적

본 용역은 비슬구천공원 테마공간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596-3번지 일원

4. 공사개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655.896Ton / 혼합폐기물 283.452Ton

5. 공사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5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2)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3)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제 1 조 적용기준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 1) 폐기물관리법령
- 2) 한국산업규격
- 3)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4) 기타 관계법령

제 2 조 용역자의 의무

1.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완료후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용역의 시행에 관계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간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지의 사용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제법규의 준수

1.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 7 조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8 조 설계변경 조건

1. 용역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 당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이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제 9 조 현장관리

1.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작업중 감독원 허가없이 교통방해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폐기물 처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중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용역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중.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한다.

제 11 조 준공후의 정리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확인 및 검사

1.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처리한다.
2.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4 조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1. 폐기물 처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2. 처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한다.

제 15 조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장비의 운전 및 현정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사전보고 및 응급조치

1. 폐기물처리용역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SCNFKR사고,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료를 구도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17 조 환경보호

처리 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